

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

1 인사 개요

- 법무부는 오늘(9. 29.) 공소청¹⁾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(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,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, 일반검사 11명) 인사를 10. 2.(금)자로 시행하였음

2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범위

- 「공소청법」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²⁾ 검사로 보기 때문에 직제 변경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음

<인사발령 불요 사례>
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→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
※ 형사1부가 조직개편 전후로 모두 1차장 소속, 차장산하 변동 없음
-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→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

- 보직명 변경, 부·과의 신설 또는 명칭·소속 변경 등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필요함

<인사발령 필요 사례>

- (보직명 변경)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→ 수원지방공소청장
- (부명 변경)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 →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
- (소속 변경)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 →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장
※ 범죄수익환수부가 기존 4차장산하에서 3차장산하로 변경

1)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단위조직 개념

2)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관 명칭 개념

3 인사 특징

-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되,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였음
- 업무 역량 및 리더십,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하였음
- 「형사소송법」 및 「공소청법」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(시효임박 선거사건 포함)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,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하였음
- 다만,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하여,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음

4 인사 내용 : 별첨

5 인사 일정 : 2026. 10. 2.(금)자 부임 ☒

담당 부서	법무부 검찰국 검찰과	책임자	과장	나하나	02-2110-3248
		담당자	검사	임하나	02-2110-4202